



보도자료

2020. 12. 18.(금) 배포



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

- ◆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, 속도 제한, 이동장치 등록제, 전용 거처 구역 설정 등 안전관리 규정 마련
- ◆ 안내된 규정을 바탕으로 대학별로 세부 규정 마련·시행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 킥보드, 전동 휠 등)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「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*」을 마련하였다.

* 교육부가 대학 내 「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」 초안을 만들고, 대학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

- 그동안 대학 내에서 조작 미숙 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과정에서 차량과 충돌하거나 과속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.
- 또한,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학 구성원의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의 증가에 따라,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했다.

□ 이에,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, 충전 및 주차,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여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,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.

-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

시행할 예정이다.

- 이번에 마련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하고 대학 내 도로의 여건 및 차량속도 등을 고려하여,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/h 이하 등으로 제한한다.
 -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주차를 막고,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하여,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.
 - 대학 구성원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의 등록제를 시행 하고,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,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한다.
 - 그밖에도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,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,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대학에 배포 할 예정이다
- 한편,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시 '대학의 안전지표'에 반영하여, 각 대학에서 마련한 자체 안전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 - 또한, 대학 내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 시설법을 개정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,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의 안전 의무를 부과하여 대학 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갈 계획이다.
-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“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, 앞으로

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